

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32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7년 5월 11일

발 의 자 : 박종욱 의원

찬 성 자 : 박찬원, 함명섭
장문혁, 이범연
임영순 의원

1. 주 문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17년 5월 15일,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「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 등 2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 : 없음

심 사 제 획

1. 활동목적

-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및 신속한 의사진행
-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
2. 심사안건

-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
-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
- 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-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3. 활동기간

- 2017년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한다.

4. 구성

- 박찬원 의원, 함명섭 의원, 박종욱 의원, 장문혁 의원, 이범연 의원
임영순 의원

5. 운영계획

일시	차수	내 용	비고
2017. 5.15 (월)	제1차 조례특위 (11:00)	1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. 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.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